내용 일반법인 중소기업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(조특법§10) 신성장･원천기술연구개발비 × 최대 30\* %〔20%＋(수입 금액 대비 신성장 R&D 비중 × 3배)〕 \*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은 최대 40% (25%+α) 신성장･원천기술연구개발비×최대 40%〔30%＋(수입금액 대비 신성장 R&D 비중 × 3배)〕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×최대 40% [30%+ (수입 금액 대비 국가전략기술 R&D 비중 × 3배)]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×최대 50% [40%+(수입 금액 대비 국가전략기술 R&D 비중 × 3배)] 위 해당･선택 않은 경우 ①･②중 많은 것 선택 ① 직전년도 발생액 초과금액× 25% ② 당해연도 R&D비용×〔기본 0% ＋(매출액 대비 R&D 비중 ×1/2배\* 〕 \* 최대 2% 위 해당･선택 않은 경우 ①･②중 많은 것 선택 ① 직전년도발생액 초과금액 × 50% ② 당해연도R&D비용×25% \*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공제율 단계적 인하 - 중소기업 졸업이후(유예기간 포함) 3년간 15%, 그 이후 2년간 10% ※ 중견기업 공제율 신설 (’13.1.1.이후 개시 과세연도) ①･②중 많은 것 선택 ① 직전년도 발생액 초과금액×40% ② 당해연도 R&D비용×8% ☞ 중견기업(조특령§9③) 1. 중소기업이 아닐 것 2.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업종 3.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충족 4.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 미만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(조특법§12) -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동일 - 특허권 등 이전소득에 대한 법인세 50% 감면 - 중견기업\* 은 중소기업과 동일 \* ’22.1.1.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- 특허권 등 대여소득에 대한 법인세 25% 감면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세액공제 (조특법§13의2) 중소기업과 동일 -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출자금액의 5% 세액공제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(조특법§19) 해당없음 - 성과공유 중소기업\* 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15% \*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 요건 삭제 \* 최대주주 등,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제외 통합투자세액공제 (조특법§24) 시설투자(%)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1) 1 3 10 3 신성장･원천기술 3 5 12 국가전략기술2) 6 8 16 4 1) 공제대상자산 : ① 사업용 유형자산 (단, 토지･건물, 차량, 비품 등 제외) ② 일부 유형자산(①제외)과 무형자산 2) ’21.7.1. 시설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